조선봉건왕조시기 형률에 규정된《10악》과 형사책임의 계급적성격

천 세 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에 이르는 모든 착취사회의 법은 착취계급을 위하여 복무하였으며 착취계급은 그것을 통치수단으로 하여 국가적지배를 유지하여왔습니다. 착취사회의 모든 법은 그 계급적성격과 사명으로 보아 철두철미 반동적이고 반인민적인것입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40폐지)

조선봉건왕조시기 형사법인 형률은 봉건지주계급의 리익을 유지공고화할것을 목적으로 제정실시된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통치규범이였다. 여기에는 봉건지주계급의 착취와 억압에 장애로 되는 일체 행위를 무자비하게 탄압할것을 규정하였다. 특히 《10악》이라는 열가지 범죄조건을 특별히 설정해놓고 그를 범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도록 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형률에서의 《10악》은 《경국대전》형전의 보충법인 《대명률직해》에 규정되였다. 그에 의하면 《10악》에는 국가주권침해죄인 모반(謀反), 모대역, 모반(謀叛) 과 강상죄인 악역, 부도, 대불경, 불효, 불목, 불의, 내란이 속하였다.

착취사회의 모든 법과 마찬가지로 조선봉건왕조시기 형률이 규정한 《10악》과 형사책임은 철두철미 봉건통치와 봉건적신분질서를 옹호하는 수단이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형률에 규정된《10악》과 형사책임은 첫째로, 봉건지주계급의 정권과 전제국왕의 통치권을 보호하기 위한것이였다.

《10악》과 형사책임은 무엇보다먼저 피지배계급인민들의 반봉건적진출을 탄압함으로 써 봉건지주계급의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것이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봉건지주계급은 정치적지배권을 틀어쥐고 근로인민대중을 억압함으로써 그들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토지에 대한 봉건적소유관계에 기초하여 인민들을 착취함으로써 저들의 경제적리익을 보장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정치는 반동적인 봉건지주계급의 독점물로 되여있었으며 노비,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은 정치에 참가할수 없었다.

조선봉건국가는 중앙집권적통치체계를 강화하고 이에 의거하여 전조, 공물, 부역, 신역, 환자 등 여러가지 명목으로 인민들을 착취하였다. 게다가 토지겸병을 통한 개별적량 반지주들의 착취와 억압도 날을 따라 강화되였다. 봉건국가와 개별적봉건지주들의 착취와 그를 옹호하기 위한 탄압은 인민들로 하여금 반봉건투쟁에 떨쳐나서게 하였다.

이로부터 봉건통치계급은 저들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봉건투쟁에 참가한 노비, 농민을 비롯한 피착취, 피지배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을 《10악》의 모반(謀反; 반역음모하여 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또는 모대역(국왕을 반대하여 종묘나 왕릉, 왕궁을 파괴하는 행위), 모반(謀叛; 반란음모하여 제 나라를 배반하고 몰래 남의 나라와 내통하는 행위)을 포함한 《반역죄》에 걸어 가장 가혹한 형벌을 가하였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반역죄를 음모한자와 그에 공모한자는 주모자이건 추종자이건 관

계없이 사지를 찢어죽이는 릉지처참형에 처하며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였으며 가족친척들에게는 연좌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반역죄의 주모자와 공모자의 아버지와 16살이상의 아들은 교형에 처하며 15살이하의 아들 및 어머니와 시집을 가지 않은 딸, 안해와 첩, 할아버지와 손자, 형제와 누이, 아들의 안해와 첩은 공신의 집에 주어 종으로 만들게 하였다.

반역죄의 관여범에 대해서도 무거운 형벌을 들씌우도록 하였다. 반역을 음모하였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방임하거나 숨겨준자는 참형에 처하며 알고도 고발하지 않 은자는 장형 100대와 류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봉건통치배들의 가혹한 형사적탄압에도 불구하고 봉건적인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반봉건적인 투쟁은 폭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으로 계속되였으며 그것은 봉건통치배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는 과정에 외래침략자들이 감행한 파괴략탈로 하여 나라의 경제는 혹심하게 파괴되였고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봉건적착취와 억압이 강화됨에 따라 도탄에 빠진 인민들은 도처에서 반침략, 반봉건투쟁에 일떠섰다.

이러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봉건국가는 봉건통치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규제의 폭을 보다 넓히고 형사적탄압을 강화하였다.

《속대전》에는 밤을 타서 《무리를 지어》 인명을 살해하는 경우에는 재물을 탈취하였는가 안했는가를 따지지 않고 부대시참에 처하는 동시에 처자는 종으로 만든다, 무장을 갖추고 《변》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형제와 처첩까지 사형에 처한다, 군복차림에 말을 타고 관청문앞에서 《변》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본인은 부대시참하고 처자는 노비로 박아넣는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조선봉건왕조 후반기 봉건통치제도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보다 폭력적 인 반봉건투쟁으로 이행된데 대처하여 봉건통치제도를 반대하여 정의로운 투쟁에 떨쳐나 선 인민들을 탄압하기 위한것이였다.

조선봉건왕조의 말기 형률에도 봉건적인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여 일떠선 인민들의 폭력투쟁을 봉건통치제도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몰아 탄압하기 위한 형사적조치들 은 계속되였다.

봉건통치배들은 무너져가는 봉건제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한고리로 이전의 법규들을 재확인하는 한편 변화된 사회현상을 반영한 새로운 법규들을 실시하였다. 1785년에 《대전통편》을 편찬실시하였으며 련이어 《전률통보》를 간행하여 그 보충법으로 하였다. 1865년에는 조선봉건왕조 전반기의 《경국대전》, 후반기의 《속대전》, 《대전통편》 등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기본법전들을 전부 종합하고 거기에 다시 《대전통편》간행이후의 수교와립법들을 정리하여 《대전회통》을 편찬하여 실시하였다.

이 법전들의 형률조문들에서는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으로부터 전제왕권과 봉건통치제 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반동적, 반인민적인 형사조치들이 재확인되거나 새로 보충되 였다.

《10악》과 형사책임은 다음으로 피지배계급인민들의 반봉건적진출을 탄압함으로써 전제국왕의 신변과 통치권을 보호하기 위한것이였다.

조선봉건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국왕에게 집중되여있고 봉건지주계급의 리익을 대변 하는 왕의 의사와 명령에 의하여 국가활동이 진행되였다. 왕은 봉건국가의 최고권력을 대 표하며 봉건지배계급은 왕권의 실현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보장하였다.

조선봉건국가의 통치배들은 전제왕권을 공고히 하여 사회에 대한 저들의 정치적지배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지위와 신분에 따라 구별하여야 한다는 《명분사상》을 합리화하였다. 그들은 《명분사상》에 기초하여 정명(만물이 본래부터 지니고있다고 하는 운명), 명분(봉건적신분제도하에서 사회의 매 계층들이 지켜야 할 도리)을 내걸고 저들이 규정한 통치질서, 륜리도덕질서를 어김없이 지켜나갈것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임금은 신하와의 관계에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기때문에 임금과 신하사이에는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국왕을 공손하게 받들고 섬길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선봉건국가는 국왕을 잘 받들고 섬기지 못한 행위들을 《크게 공경스럽지 못한 행위》로서 대불경죄로, 《10악》에 속하는 가장 엄중한 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였다.

대불경죄로 되는 행위들은 우선 임금을 공손하게 받들고 섬기지 못한 행위와 왕과 왕실과 관련한 물건을 훔친 행위, 왕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줄수 있는 행위들이였다.

《대명률직해》 10악에 의하면 임금을 공손하게 받들고 섬기지 못한것은 《크게 공경스럽지 못한 행위》로서 대불경죄로 되였으며 여기에는 종묘나 왕릉과 같은 곳에 차려놓은 물건을 훔친 행위, 왕이 사용하는 수레나 옷을 훔친 행위, 임금이 먹을 약을 처방대로 짓지 않은 행위, 임금이 먹을 음식을 만들 때 약을 쓰면서 먹어서는 안될 재료를 섞어넣는 행위, 임금이 탈 배를 견고하게 뭇지 못한 행위 등이 포함되였다.

조선봉건국가의 통치배들은 저들의 정치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권력을 틀어 쥐고있는 최고의 통치자인 왕을 가장 《귀중하고 존엄높은 존재》로 신격화하고 그의 생명 과 건강을 철저히 보호하며 인격을 최대한으로 존중할것을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왕의 생 명과 건강, 인격을 침해하는 사소한 현상에 이르기까지 형률에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왕의 신변은 누구도 침해할수 없게 하였다.

대불경죄로 되는 행위들은 또한 국왕의 통치가 순조로이 진행되지 못하게 해를 끼친 행위들이였다.

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에서 국왕의 통치권을 방해한 경우에는 《반란음모로서 사직을 위태롭게 한》모반죄로 되였다. 그러나 왕권을 탈취하려는 의사가 없이 국왕의 통치실현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금에 대하여 《크게 공경스럽지 못한》대불경죄로 되였다. 《대명률직해》10악과 리률, 형률에서는 임금의 인장을 위조한 행위, 임금이 사용하는 인장을 훔친 행위, 임금이 벼슬아치들에게 내리는 임명장 및 임금의 인장이 찍힌 사신에게 내리는 역마발급의 문서 등을 고의로 내버리거나 파손한 행위, 왕의 명령서, 도장 등을 잃어버린 행위, 왕이 사신에게 주는 역마사용의 인장이 찍힌 문서나 왕이 사신에게 주는 배사용의 문서를 훔친 행위, 왕에게 제기하여 결론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실행한 행위, 왕에게 올리는 문건이나 보고하거나 제의함에 있어서 왕의 이름이나 묘호를 틀리게 쓰거나 말한 행위, 임금에게 말로 보고하거나 글을 올리는데서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속인 행위, 임금의 지시를 거짓으로 전한 행위, 사형에 해당한 죄를 진 사람을 교묘한 말로 왕에게 죄를 용서해주기를 간하면서 슬그머니 인심을 사려고 한 행위, 임금의 지시문을 찢어버리거나 내던진 행위, 간사한 마음을 먹고 임금을 속이거나 함부로다른 의견을 내여 제멋대로 규정을 고쳐 이전부터 있는 법을 혼란시킨 행위 등을 대불경

죄로 규제하였다.

임금을 공손하게 받들고 섬기지 못하였거나 그의 통치권실현을 방해하는 사소한 행위에 이르기까지 《10악》의 대불경죄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도록 한것은 봉건지주계급의 대표자인 전제국왕의 신변과 통치권을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인민들에 대한 정치적지배와 봉건적수탈을 강화하기 위한것이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형률에 규정된 《10악》과 형사책임은 둘째로, 봉건지주계급의 신분 적특권에 기초한 권력독점을 보호하기 위한것이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통치배들은 사람들을 세습적으로 고정된 여러 계층으로 나누고 그 계층들의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고착시키는 반인민적인 신분제도를 실시하였다. 봉건지주계급은 국가정권과 생산수단을 가지고 사회를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특권신분으로 되고 인민들은 국가정권과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것으로 하여 사회생활에서 정치적으로 무권리하고 봉건지주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인신적으로 예속되여 자기의 로동의 결과를 착취당하는 낮은 신분에 속하였다.

봉건지주계급은 이러한 신분적특권에 기초하여 국가의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였으며 《10악》과 형사책임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수단이였다.

봉건통치배들은 《귀한자가 천한자를 다스리고 천한자가 귀한자를 받들어 섬기는것은 당연한 하늘의 리치》이며 이것은 《정사하는 기본방도》로 되기때문에 봉건지주계급의 계급신분적 및 관료적특권을 침해할 때에는 중한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에서 봉건적례의질서에 기초한 계급신분질서, 관료질서에 대한 침해를 《10악》의 강상죄(삼강과 오상의 도덕을 심하게 위반한 죄)로 몰아붙이고 그를 《범한》 인민들에 대한 형사적탄압을 강화하였다.

봉건통치배들은 무엇보다먼저 가장 가혹한 노예적 또는 봉건적억압에 항거하는 노비들에 대한 형사탄압을 강화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노비는 최하층의 신분으로서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다. 봉건지주계급은 저들이 장악하고있는 계급신분적 및 관료적특권을 리용하여 많은 토지와함께 노비를 소유하고 그들을 악착하게 부려먹었다. 노비신분의 인민들은 인신적예속과경제적략탈 그리고 이에 따르는 멸시와 천대, 고역과 무권리, 기아와 빈궁 등 자기들의비참한 사회경제적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압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렸다. 그들은 도망, 등록회피 등 여러가지 소극적인 반항과 함께 신공(실제의 노예살이를 하지않는 노비들이 몸값으로 공물로 바치는 물건)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봉건통치배들은 노비들의 투쟁을 억제하고 그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들을 봉건유교교리에 의한 《례의질서》에 철저히 얽어매놓는 한편 형사적탄압을 강화하였다.

그들은 노비로서 상전에 대한 사소한 반항에 이르기까지 봉건적례의질서를 침해하는 《10악》의 불효, 불목에 걸어 무자비하게 탄압하도록 하였다. 물론 《10악》의 불효, 불목항목에는 노비라고 찍어서 밝힌것은 없다. 노비를 찍어서 《10악》에 규정하지 않은것은 봉건통치배들이 노비를 국가기관이나 개인의 《재산》으로, 《물건》으로 취급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경국대전》, 《속대전》을 비롯한 법전들과 규정 등에는 노비로서 상전을 욕설하거

나 상전의 비행을 고발하면 봉건적례의를 침해하는 가장 엄중한 범죄로, 《10악》에 속하는 범죄조건의 하나로 간주하고 가장 잔인한 형벌을 가하도록 하였다.

남자종의 안해나 녀자종의 남편으로서 남편이나 안해의 상전이 감행한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행위도 봉건적례의질서를 침해하는 특별히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행자 들을 엄격히 탄압하도록 하였다.

종(노비)의 남편이나 안해는 그 신분이 노비로 된 사람도 있고 량인으로 된 사람도 있었다. 여하른 노비소유자들의 비법행위는 그의 종인 노비가 잘 알뿐아니라 그 가족이 또 잘 알게 되여있었다. 봉건통치배들은 노비소유자들의 비행이 폭로되면 인민들에 대한수탈자, 억압자이고 온갖 패륜, 패덕을 일삼는 저들의 죄행이 드러나 봉건지주계급의 《권위》가 손상되며 나아가서 계급적대립을 격화시켜 봉건정권을 유지할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노비소유자들의 비행이 폭로되는것을 두려워한 봉건통치배들은 남자종의 안해나 너자종의 남편으로서 자기 남편이나 안해의 상전의 비행을 폭로하는 행위를 범죄로 특별히 규정하고 이를 범하는 노비의 가족들에게 장형 100대와 류형의 무거운 형벌을 들씌우도록 하였던것이다.

옛노비로서 옛상전을 때리거나 욕설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도 특별히 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행자들을 엄격히 탄압하도록 하였다.

당시 공노비와 량인, 신량역천(신분상으로는 량인이지만 천인과 같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천한 역을 강요당하던 계층)을 늘구어 국가적수탈을 늘이려는 봉건국가의 노비《변정》정책에 따라 강제로 노비로 된 일부 사람들은 노비아닌 본래의 신분(량인이나 신량역천)으로 돌아가게 되였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난날 강제로 노비로 되여 상전에게 착취당하고 억압멸시당하던 분풀이로 옛상전을 때리기도 하고 욕설하기도 하였으며 그들의 비행을 폭로하거나 고소하기도 하였다.

조선봉건국가는 이로부터 봉건지주계급의 신변과 《권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옛노비가 옛상전을 때리거나 욕설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를 특별히 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행자들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하였다. 이것은 강제로 노비로 되여 주인에게 착취당하고 억압 멸시당하다가 《방량》된 사람들을 형률로 위협하는 한편 《방량》되여 응당한 실력행사를하는 사람들을 형률의 《10악》에 걸어 무자비하게 탄압함으로써 봉건지주계급의 특권적지위를 보호하기 위한것이였다.

봉건통치배들은 다음으로 봉건지주계급의 신분적 및 관료적특권을 반대하는 백성들에 대한 형사적탄압도 강화하였다.

조선봉건국가에서 백성은 보통 량인층에 속한 인민들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였다. 상민, 평민 등으로도 불리웠다. 백성은 신분제도상 최하층신분인 노비보다는 우의 신분이였으며 당시 피지배계급신분들가운데서 기본을 이루고있었다.

백성들도 노비처럼 량반들로부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혹한 억압과 착취를 강요당하였을뿐아니라 신분적으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았다. 이들은 노비처럼 봉건국가나 개별적량반들의 소유는 아니였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봉건적예속민 또는 농노의 처지에 있었다.

봉건통치관료배들은 인민들에 대한 저들의 계급적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봉건국가의 정책을 조직집행하는자들이였다. 그들의 직무상활동이 방해되는 경우에는 봉건지주계급의 인민들에 대한 계급적독재를 철저히 보장할수 없으며 봉건통치질서도 유지공고화할수 없었다. 이로부터 봉건국가는 봉건관리들의 직무상활동을 방해하는 인민들의 사소한 행위에 이르기까지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적탄압을 강화하였다. 인민들은 봉건통치배들의 억압과수탈에 항변하면 욕설죄를, 응당한 실력행사를 하면 구타죄, 살인죄 등을 뒤집어써야 하였다.

조선봉건국가에서는 백성이 자기들을 통솔하는 관리를 죽인것, 군사들이 자기 부대의 병마사, 병마부사, 천호, 백호를 죽인것, 서리 및 아전이나 군사들이 자기를 통솔하는 5품이 상의 관리를 죽인것 등의 행위는 《10악》의 불의죄에 걸어 무자비하게 탄압하도록 하였다.

특히 감사나 원들의 지위를 중시하여 그들에 대한 절대복종체계를 세우고 거기에 봉 건적례의의 외피를 씌워 그에 항거하는 인민들에 대한 형사적탄압을 강화하였다.

도장관인 감사와 그의 통제밑에 있는 각급 고을원들은 관내의 통치권을 장악하고 봉건지주계급의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보장하였으며 그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반항을 직접 탄압하는자들이였다. 조선봉건국가는 봉건통치에서 차지하는 감사나 원들의 지위를 중시하여 그들에 대한 절대복종체계를 세우고 거기에 봉건적례의의 외피를 씌워 그에 항거하는 사람들을 《10악》의 불의죄에 걸어 엄격히 탄압하도록 하였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백성들중에서 감사나 고을원을 모욕하여 《륜리를 파괴한》 사람은 고을에서 쫓아버리고 그 집터를 못으로 만들도록 하였으며 관하백성으로서 직접 자기 고을원의 비행을 고소한 사람은 장형 100대와 류형에 처하고 몰래 다른 사람을 부추겨 고소한자는 장형 100대와 도형 3년에 처하며 그러한 사건이 꼬리를 물고 련속 일어났을 경우에는 고을의 등급을 떨구도록 하였다.

봉건도덕의 미명아래 봉건지주계급의 신분적특권에 기초한 권력독점을 보호하기 위 한 형사법적조치는 조선봉건왕조 후반기에 와서 더욱 강화되였다.

조선봉건왕조 후반기에 와서 봉건적신분제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그에 따라 봉건적인 륜리도덕의 준수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봉건국가는 무너져가는 봉건제도 특히 신분제도와 그에 따른 봉건륜리도덕의 준수를 강화하여 봉건지주계급의 신분적특권에 기초한 권력독점을 어떻게 하나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조선봉건왕조 후반기에 제정된 형률들에서는 봉건도덕을 침해하는 범죄조건들을 수많이 설정하고 그 범행자들을 엄격히 탄압하도록 하였다. 조선봉건왕조 후반기에 제정된 법전들에는 봉건도덕의 미명아래 피지배계급에 속하는 인민들이 봉건지주들에 대한 구타행위에 대한 범죄조건들을 특별히 많이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였다. 《속대전》과 《대전통편》의 구타죄를 규정한 조문들의 거의 전부가 그와 관련된것들이다.

이와 같이 조선봉건국가는 봉건도덕의 미명아래 봉건지주계급의 생명,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10악》에 속하는 강상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사적탄압을 특별히 강화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통치배들은 저들이 차지하고있는 신분적특권과 권력을 리용하여 백성이나 노비들을 소나 말처럼 부리고 때리면서도 그것을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규제조 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비나 백성의 사소한 항거와 반항에 대해서는 봉건도덕을 위반 한 《10악》의 강상죄로 되는 살인죄요, 상해죄요, 구타죄요 하면서 가혹한 형벌을 들씌우 고 무자비하게 탄압, 처형하도록 규제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자는 어떤 경우에도 형벌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선봉건국가의 형률에 의하면 형벌의 면제는 현재 발견되지 않은 범죄의 범죄자, 심리중에 있는 범죄자,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에게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형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였다. 형벌의 면제는 속형제도, 대사 및 특사제도, 신분적특권의 보호제도, 자수제도, 고발제도 등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실현되였다. 형률에 형벌의 면제를 폭넓게 규정한것은 봉건지주계급에게는 죄를 범하여도 형사책임을 면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인민들에게는 기만적인 《관용성》을 베풀어 악형을 반대하는 그들의 투쟁을 회유무마하기 위한것이였다.

그러나 피지배계급에 속하는 인민들의 봉건지주들에 대한 살인, 상해, 구타행위를 봉건도덕을 침해하는 강상죄로 몰아붙이는 경우에는 형벌의 면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1418년 11월에 발포된 대사령에 대한 선포문 하나만 놓고보아도 여기에서는 《노비로서 상전을 죽인 죄, 종이 상전에 대하여 죽이려다가 죽이지는 못했다고 해도 그 진상이 명백한자, 상전의 비행을 고발한자, 상전을 욕한자로서 사형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대사령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선봉건국가는 대사령을 선포할 때마다 이러한 보류조건을 놓치지 않고 강조하였다. 이것 하나만 놓고보아도 봉건통치배들이 봉건지주계급의 신분적특권에 기초한 권력독점을 옹호하기 위하여 얼마나 날뛰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형률에 규정된 《10악》과 형사책임은 셋째로, 봉건도덕의 미명아래 봉건지주계급을 위한 가부장적가족친척제도를 보호하기 위한것이였다.

조선봉건국가의 통치배들은 가부장적가족친척제도를 유지강화하여야 봉건적신분제도를 공고히 하고 전제왕권을 신성화하여 봉건통치제도를 강화할수 있으며 인민들을 그에 대한 무저항과 맹목적인 굴종에로 내몰수 있다고 보았다. 이로부터 그들은 《삼강오륜》을 어기고 가부장적가족친척제도를 침해한 행위를 가장 엄중한 범죄의 하나로 몰아붙이고 그 범행자들에 대한 형사적탄압을 강화하였다.

봉건통치배들은 무엇보다먼저 자식으로서 조부모, 부모 등의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 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였다.

봉건통치배들은 왕에게 잘 복무하려면 반드시 부모를 잘 섬기고 공손하게 받들어모셔야 한다는것, 집에서 부모를 잘 섬기고 공손하게 받들어모셨기때문에 그 마음을 왕을 잘 섬기는데 옮길수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는 자식의 근본으로 되기때문에 자식은 아버지에 대하여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여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봉건통치배들은 자식으로서 부모를 잘 섬기고 받들어모시지 못한 사람은 《하늘땅에용납될수 없는것이며 나라의 법으로도 용서하지 않는다.》, 《다섯가지 형벌에 속하는 3 000가지 죄중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한 죄보다 《더 큰것은 없다.》고 하면서 봉건도덕에 저촉되는 자식들의 사소한 행위에 이르기까지 《10악》의 강상죄에 걸어 탄압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봉건도덕의 미명아래 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절대적인 복종을 형률로 강박한것으로서 결국 왕의 《적자》인 나라안의 모든 주민들이 왕을 공경하고 잘 섬기도록 하자는데 진의도가 있었다.

《대명률직해》명례률에 의하면 모반대역죄를 제외하고는 가족친척간에 죄를 서로 감 싸준자는 범죄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 규정을 어기고 고발하면 범죄시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하였다. 그리하여 《대명률직해》의 형전에는 가부장적가족친척내에서 봉건도덕질서를 어기고 고발한 범죄조건들이 규정되고 침해정도에 따라 각이한 형벌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르면 자손으로서 조부모, 부모 등의 비행을 고발한 경우에는 장형 100대와 도형 3년을 언도받게 되여있다.

조선봉건왕조 전반기 법전인 《경국대전》의 형전에서도 아들이나 손자로서 부모의 죄행을 고발한자는 교형에 처한다고 특별히 규정하였다. 이것은 당시 봉건지주들속에서 토지와 노비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분쟁이 첨예하였던 조건에서 그들속에 봉건륜리도덕을 강요하여 부모에 대한 효도를 장려하기 위한것이였다. 조선봉건왕조 초기에 토지와 노비에 대한 소유권을 재인정하는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례없이 큰 규모에서 진행되고있던 조건에서 봉건지주계급의 가족들에서는 그 소유권을 둘러싸고 송사질하는 현상이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런 현상을 허용한다면 봉건적인 례의질서가 침해되여 부모에 대한효도가 약화되고 그렇게 되면 임금에 대한 복종정신이 약화된다고 본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아들이나 손자로서 부모나 가장의 비행을 고발하는 행위를 법전에 특별히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그러한 행위자들을 극형으로 탄압하도록 하였던것이다.

조선봉건왕조 후반기 봉건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봉건지주들의 가족친척내에서는 더 많은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기 위하여 봉건적가정륜리도덕을 어기고 허위고발하는 행위들이 더욱 성행하게 되였다. 이것이 유교적통치리념을 허무는 행위로 된다고 본 봉건통치배들은 《속대전》에 자식으로서 부모의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특별히 규정하고 형사책임을 강화하였다. 《속대전》의 형전에 의하면 장인 또는 장모를 죽인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자 등에는 사형에 이르기까지의 중형을 들씌우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부모의 죄에 대한 허위고발행위에는 반좌률(거짓 고발하여 남을 죄지게 한 사람에 대하여 그 고발한 죄와 같은 처벌을 가하는 형벌)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실례로 아들이나 손자로서 《친어머니를 속여서 신고한자》는 부대시교(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집행되는 교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허물어져가는 봉건륜리도덕을 어떻게 하나 되살려 봉건통치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려는 통치배들의 궁여지책의 산물이였다.

봉건통치배들은 다음으로 처나 첩으로서 남편이나 남편의 부모, 조부모 등의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한데 대한 형사적탄압도 강화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남존녀비를 합리화하여 녀자는 시집가면 반드시 자기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할것을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안해는 남편과 남편의 부모, 조부모 등의 요구에 그것이 옳건 옳지 않건 관계없이 무조건 순응하여야 하였으며 이에 배치되면 범죄시되였다. 특히 처나 첩으로서 남편이나 남편의 부모, 조부모의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하거나 침해할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10악》의 강상죄로 되여가장 참혹한 형벌을 면치 못하였다.

《대명률직해》형률에 의하면 처나 첩으로서 자기 남편을 죽이거나 남편의 부모, 조부모를 죽인 경우, 전 남편의 부모를 죽인 경우에는 릉지처참형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전 남편의 조부모 또는 부모를 죽일것을 음모하여 행동한 경우, 남편이나 그의 조부모, 부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물론 구타한것이 상해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참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안해나 첩으로서 남편을 구타하여 매우 위독한 병에 걸리게 한경우, 남편형제의 아들을 고의로 죽인 경우, 남편이나 전 남편의 조부모, 부모의 잘못에 대하여 엄하게 지적하거나 욕한 경우에는 교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경국대전》형전에서

는 안해나 첩으로서 시부모나 남편의 죄행을 고발한 경우에도 교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남자를 존대하고 녀자를 천시하는 남존녀비사상을 합리화하고 가부장적가족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것이였다. 녀자는 어려서는 무조건 아버지를 따라야 하며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봉건도덕을 어긴 녀성을 형벌로 다스려 남편이나 남편의 부모들에게 무조건 순종하게 함으로써 가정내부에서의 가장의 절대적권리를 철저히 담보하여 이러한 기강이 왕을 섬기는데 이어지게 하려고 하였던것이다.

봉건통치배들은 다음으로 가족친척내에서 아래사람이 웃사람의 생명, 건강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도 강화하였다.

봉건도덕에서는 가족친척내에서 웃사람과 아래사람사이에는 순차가 있어야 한다는것을 설교하였다. 이러한 봉건도덕관에 기초하여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부리고 아래사람이 웃사람을 섬기는것은 하늘의 리치이며 백성의 도덕》이기때문에 《아래사람으로서 웃사람을 업신여기며 어린것이 어른을 업신여기는것은 설사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두둔해주지 말고 죄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가족친척내에서 아래사람이 웃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할것을 강요하였다. 이것을 어기면 《10악》의 강상죄로 몰려 형벌의 대상으로 되였다.

조선봉건국가의 통치배들은 동성 및 이성 친척들내에서 가장을 정점으로 하는 우아 래의 종속체계를 세우고 충충이 종속된 가장들을 전제주의적인 봉건통치체제에 철저히 얽매여놓고 그들을 통하여 가족친척들에 대한 억압과 수탈을 보장하려고 하였다. 바로 이 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족친척내에서 아래사람이 웃사람을 잘 섬기지 못한 행위를 가부장적인 봉건도덕을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행자들에 대한 형사적탄압을 강화하였던것이다.

이처럼 조선봉건왕조시기 형률에 규정된《10악》과 형사책임은 절대적인 왕권에 기초 한 봉건통치와 봉건적신분질서를 유지하여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기 위한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형벌제도였다.

우리는 착취계급국가의 법의 계급적성격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해주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기위한 사업을 주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조선봉건왕조, 《10악》, 계급적성격